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2015. 12.

홍 성 훈

서 언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약 체결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조세정책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국제조세 제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8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약 체결국이나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 구분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0%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국제 거래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이러한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투자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헝가리, 스위스를 경유하는 몇몇 투자 경로를 제외하고, 흔히 조약 쇼핑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경유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 경로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가 조약 쇼핑을 위해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확률적으로 이용하고, 과세당국도 이러한 투자자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후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면, 과세당국이 투자자에 대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 비해, 균형 전략에 따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 쇼핑을 비롯하여 국제조세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문제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OECD/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가 그러한 예이다. 앞으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 및 경제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과거처럼 자본 수입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기보다 자본 수출국 또는 중개국의 관점에서도 해석하여 조세조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성훈 박사가 집필하였다. 집필 과정에서 원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고 익명의 심사자들로부터도 심사 의견을 받아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 수집 및 정리에 큰 도움을 준 허윤영 전문연구원과 윤민기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유현영 회계사로부터도 국제조세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아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이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보고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조세조약은 여러 나라 사이의 조세정책을 서로 조율하는 수단으로 국제조세 제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약 체결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꾸준히 확장되었고, 2015년 5월 현재 85개국과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6개의 조약이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 구분에 따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0%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배당의 경우, 멕시코와의 조약에서 유일하게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이자의 경우,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와의 조약에서 각각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사용료의 경우, 아일랜드, 헝가리, 몰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와의 조약에서 각각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 20%이다. 이자의 경우 채권을 내국법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4% 또는 20%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결정된다. 소득 구분이나 체결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제 거래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이러한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투자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그리고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분석 대상 70개국 사이의 조세조약 세율에 대한 자료를 행렬의 형태

로 직접 구축하고,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국가들 사이에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국가 사이에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유국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경유국에서의 세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에서 약 13,500개에서 18,500개까지의 세금 최소화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간접 경로는 약 9,900개에서 15,500개까지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 대상 국가 사이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우리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경유국 세율을 1%로 가정하고, 거주국이 멕시코, 원천국이 러시아인 경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경유했을 때의 세율이 1%라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등은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조약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자본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자국의 경제 규모가 큰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국가들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유처럼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자본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등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할 때, 국내 세법에 의해 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주요 경유국이라고 알고 있는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또는 헝가리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각각 26개 존재하고,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 헝가리,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를 제외하고, 흔히 조약 쇼핑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 경유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 경로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세조약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세조약 쇼핑 방지를 감안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해온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자본 수입국의 입장에서 조세조약정책을 운용하기보다는, 자본 수출국 또는 중개국의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벨기에 등의 입법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도 구축하였다. 그리고 모형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조약 쇼핑을 위해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이용하는 확률적 빈도를 계산하였다. 투자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과 간접 경로 이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간접 경로를 선택하는 확률을 결정한다. 투자자의 확률적 행동과 비슷하게, 과세당국도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세무조사 비용을 뺀 순조세수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세무조사 후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면, 과세당국이 투자자에 대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 비해, 균형 전략에 따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거주국에 따라 국외소득 과세면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달리 설정될 경우, 투자자의 조약 쇼핑 행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거주국에서 국외소득 과세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반면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거주국 세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투자자가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균형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균형에서 조약 쇼핑을 방지할 수 있다.

조약 쇼핑을 비롯하여 국제조세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문제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OECD/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가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가 관심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세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정책 권고를 따라 세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 및 경제계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과거처럼 자본 수입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기보다 자본 수출국 또는 중개국의 관점에서도 해석하여 조세조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3
II.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24
1.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및 탐색 알고리즘	25
2. 세율 매트릭스	29
3.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	36
가. 경유국 세율 1%로 가정한 경우	36
나.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한 경우	43
4. 시사점	47
III. 조세조약 쇼핑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	50
1. 모형	51
2. 분석	54
3. 시사점	65
IV. BEPS 방지 프로젝트와 조세조약정책 과제	68
1. 조세조약 남용 방지	70
2. 조세분쟁 해결제도 수립	74
3. 조세정보 자동교환	75
V. 결 론	78
참고문헌	80

표목차

〈표 II-1〉 분석 대상 국가 및 코드	30
〈표 II-2〉 EU/EEA 국가목록	32
〈표 II-3〉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서울 1%	39
〈표 II-4〉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서울 1%	42
〈표 II-5〉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명목서울	44
〈표 II-6〉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명목서울	46
〈표 IV-1〉 BEPS 프로젝트 요약	69
〈표 IV-2〉 BEPS Action 6 Discussion Draft의 혜택제한 조항	72

그림목차

[그림 II-1] 서울 매트릭스 작업 흐름도	31
[그림 II-2] 서울 매트릭스	35
[그림 II-3]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서울 1%	39
[그림 II-4]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서울 1%	42
[그림 II-5]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명목서울	44
[그림 II-6]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명목서울	46

I. 서론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적 이중과세란, 한 나라의 거주자(납세자)가 여러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만약 국제적 이중과세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국제적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국제적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국내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생산요소가 국제적인 범위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왜곡이 일어나는 만큼 비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국내일 수도 있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3의 국가일 수도 있다.

조세조약의 또 다른 목적은 조약을 맺는 체결국가 사이에 과세권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체결국들이 적절한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생산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특정 국가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이 조세조약을 비롯한 국제조세 규범에 불만을 갖고 상황을 바꾸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에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체결국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 인적용역 등 소득 구분에 따라 거주국 또는 원천국에서의 과세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료 소득은 원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거주국에서 과세하거나, 반대로 인적용역 소득은 원천국에서 과세하고 거주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조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최댓값을 국내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게 조약에 명시하여 세율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세법과 함께 조약에서 국외소득 과세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중과세 방지보다도 이중 비과세 방지가 정책적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소득 여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각종 과세면제 및 세액공제 제도에서 맹점을 찾아 적절히 조합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인위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나 우선주처럼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나라마다 과세 여부가 다른 ‘혼성 불일치’가 있을 때 혼성 금융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 쇼핑, 이자비용 공제 남용, 외국납부세액 생성거래 등이 이중 비과세가 일어나는 상황을 공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

조세조약은 여러 나라 사이의 조세정책을 서로 조율하는 수단인 만큼 국제조세 제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중과세 방지 및 체약국 간 과세권 배분과 같은 조세조약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고,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중 비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 대응 정책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꾸준히 확장되었고, 2015년 5월 현재 85개국과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6개의 조약이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 구분에 따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0%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예를 들어, 배당의 경우 멕시코와의 조약에서 유일하게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이자의 경우,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와의 조약에서 각각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사용료의 경우, 아일랜드, 헝가리, 몰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와의 조약에서 각각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 20%이다. 이자의 경우 채권을 내국법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4% 또는 20%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게 결정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세조약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다. 국제적인 투자자나 기업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분석하여 조세조약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분석 대상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조세조약 세율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70개국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에 최대 하나의 경유국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약 조건하에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조세조약 세율 매트릭스에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70개국 사이에는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유국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유국에서의 세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에서 약 13,500개에서 18,500개까지의 세금 최소화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간접 경로는 약 9,900개에서 15,500개까지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각의 거주국-원천국 조합에 대해 세금 최소화 투자 경

로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이거나 거주국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원천국인 경우, 즉 우리나라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유국의 세율을 1%로 가정한 경우, 한국-멕시코조약이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0%로 규정하고, 멕시코와 다른 주요 자본수출국 사이의 조약이 다시 제한세율을 0%로 규정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0%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경유국의 세율을 명목 법인소득세율로 가정한 경우, 한국-아랍에미리트 조약이 제한세율을 5%로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소득세와 배당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한 경유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세율 매트릭스에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온 가상적인 것이다. 현실에서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는 투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 두 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가 아니라, 세금 최소화에 가까운 투자 경로를 찾도록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세금 최소화에 가까운 투자 경로를 찾도록 한다면, 멕시코처럼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 0%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다음 최솟값인 5%를 적용받는 영국, 스위스, 파나마, 몰타 등이 경유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거주국인 경우, 즉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나가는 경우, 가정에 따라,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다양한 경유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국 세율이 1%인 경우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헝가리 등이 주요 경유국이었다. 영국과 헝가리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있지만,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 건지, 버뮤다, 케이만, 헝가리가 경유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 나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모든 분석 대상 국가 사이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우리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경유국 세율을 1%로 가정하고, 거주국이 멕시코, 원천국이 러시아인 경우였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경유했을 때의 세율이 1%라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조세조약 쇼핑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일 때이다. 이러한 경우 경유국 세율에 따라 멕시코나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반면 우리가 흔히 주요 경유국이라고 알고 있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과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 또는 헝가리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각각 26개 존재하고,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 헝가리,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를 제외하고는, 흔히 조약 쇼핑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던 경유국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 경로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세조약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세조약 쇼핑 방지를 감안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해온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으로서 조세조약 쇼핑 방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경유국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벨기에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두 나라는 정보교환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국내 세법으로 정하였다. 물론 이 두 나라의 경우

처럼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할 때, 국내 세법에 의해 제한세율을 5%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세법에 의해 세율을 인하하면, 조약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약국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 세율 매트릭스와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만으로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투자자가 이러한 경로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인지, 또는 반대로, 과세당국이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투자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형 분석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거주국이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거꾸로 투자자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조약 쇼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정확히 예상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해보자. 투자자와 과세당국이 있다. 투자자는 거주국에서 원천국(투자대상국)으로 투자하는데, 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경로를 선택한다. 투자 경로는 간접 경로일 수도 있고, 직접 경로일 수도 있다. 한편 과세당국은 투자자를 세무조사하여 투자자가 정말 직접 경로를 이용했던 것인지 간접 경로를 이용했던 것인지 판별하고, 간접 경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는 비용이 소용된다. 물론 현실에서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투자 경로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에서 가정하는 세무조사는, 이러한 사전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거주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 또는 화폐 단위로 측정한 세무조사 성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게임이론 모형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각 경기자의 타입으로 정의하고, 경기자의 전략은 타입의 함수로서 각 경기자의 타입에 대해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게임이론 모형에서 균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투자자가 조약 쇼핑을 위해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이용하는 확률적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균형에서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이용하는 확률은, 모형의 여러 매개 변수 중에서도, 세무조사 비용, 기대소득, 가산세 세율 등으로 계산된다. 물론 이러한 균형 확률은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 쇼핑이 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항상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세당국도 항상 투자자를 세무조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는 가산세나 조세불복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형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직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때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조약 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적절한 범위의 확률로만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균형 확률을 보면, 투자자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과 간접 경로 이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간접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원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간접 경로 이용과 같은 조약 쇼핑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가장 근원적인 대응 방안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접 경로를 모두 없애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접 경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라도 그러한 경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약 쇼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제 조약 쇼핑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과세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투자자의 확률적 행동과 비슷하게 과세당국도 확률적으로 세무

조사를 하여 세무조사 비용을 뺀 순조세수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균형 확률은 기대 가산세율, 경로에 따른 세후 수익률의 차이, 거주국에서의 세율 등 모형의 매개변수로부터 계산된다. 물론 이러한 균형 확률도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형의 가정을 정확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더라도, 투자자의 조약 쇼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가산세율과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조약 쇼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사점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편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면, 과세당국이 투자자에 대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 비해, 균형에서의 혼합전략에 따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더 큰 보수를 얻는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은 조약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높은 가산세율을 설정하여 일정한 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 쇼핑이 원천국의 세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는 공식도 계산할 수 있다.

투자자의 거주국에 따라 국외소득 과세면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달리 설정될 경우, 투자자의 조약 쇼핑 행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거주국에서 국외소득 과세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즉 조약 쇼핑을 방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조약 쇼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주국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주국의 세율이 높으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도 많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도 크다. 그러므로 조약 쇼핑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거주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투자자의 세후소득에 변화가 없다.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약 쇼핑을 선택할 유인이 없다. 하지만 거주국의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여 조약

쇼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거주국 세율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조세조약 쇼핑을 비롯한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세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정책 권고를 따라 세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 및 경제계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조세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조약에만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 조약 쇼핑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조약 쇼핑에 이용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여러 경유국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유국만 막는다고 다른 경유국을 통해 일어나는 조약 쇼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 경로에서 주요 경유국이 아닌 국가와의 조약에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도 방지 효과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조약 쇼핑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면 어차피 주요 경유국과의 조약을 이용해야 하고, 경유국이 아닌 국가와의 조약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조약 쇼핑 및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수많은 선행 연구 중에서, 본 보고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Hong(2014)은 15개국을 대상으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영국, 스위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유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투자 경로에서

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가 경유국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경유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 케이만,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처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이들 국가는 경유국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가가 케이만, 버뮤다와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들 나라에 송금하는 배당에 대해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자의 조약 쇼핑 결정과 원천국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정을 고려한 게임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모형의 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투자자도 확률적으로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고, 과세당국도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균형 확률을 모형의 변수로부터 계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균형에서의 원천국 세수입 감소분을 추정할 수 있는 공식도 제시하였다. 한편 Hong(2015)은 게임이론 모형을 일반화하여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불완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가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즉 과세당국이 투자자의 거주국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투자자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둘의 균형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균형이 거주국의 과세제도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홍성훈·안종석(2014)은 다국적기업 및 집합투자기구의 조세전략 및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관련 문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¹⁾ 다만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공통적으로 발견하였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 간접 투자 구조를 사용하고 이러한 결정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둘째, 간접 투자 구조를 이용하는 다국적기업은 대체로 하나의 경유국만을 이용한다. 셋째, 거주국에 따라 경유국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1) Mintz and Weichenrieder(2010)는 독일계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Lewellen and Robinson(2013)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Weyzig(2013)는 네덜란드에 특수목적법인을 두고 경유하는 사례를 모아 분석하였다. 예외적으로 Lejour(2014)과 van't Riet and Lejour(2015)는 조세조약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세율 매트릭스와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경유국 세율 가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 조세조약 쇼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게임이론 모형으로 분석한다. 모형의 균형을 찾고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한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탐구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Ⅱ.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꾸준히 확장되었고, 2015년 5월 현재 85개국과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6개의 조약이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 구분에 따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0%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예를 들어, 배당의 경우 멕시코와의 조약에서 유일하게 제한세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달리 말하면, 국제적인 투자자나 기업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조세조약의 효과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체약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경제활동에도 미친다. 이러한 효과를 조세조약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그런데 전 세계의 국가들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들을 집합적으로 보아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수의 선행 연구를 제외하면, 조세조약들이 네트워크로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예외적인 선행 연구로 홍성훈·안종석(2014), Hong(2014), van't Riet and Lejour(2015) 등이 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행료가 할인이 되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

해 더 싸다면, 길을 약간 돌아가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료가 더 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더 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도로가 직접 연결하는 지점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연결 지점을 거쳐야 한다. 만약 여러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개별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정보도 주어져 있다면, 도로 이용자는 자신의 출발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 경로 중에서 통행료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에서 고속도로를 조세조약, 통행료를 세금, 도로 이용자를 투자자로 바꾸어 생각하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된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가? 둘째,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유국이 있는가? 셋째, 국제적인 투자 경로에 있어 주요 경유국들의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 정책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1.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및 탐색 알고리즘

국가를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조세조약을 네트워크의 링크(link)로 정의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들을 집합적으로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 및 링크를 통과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는 h 국에 거주하면서 s 국에 투자한다. 여기서 h 국을 거주국, s 국을 원천국이라 부른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투자자는 s 국에서 소득 m 을 벌고, 이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h 국으로 모두 보내려고 한다. 투자자는 h 국에서 s 국으로 투자하면서, 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경로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투자자의 거주국에서 소득 공제(deduction) 또는 면제(exemp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²⁾ 투자 경로는 직접 경로일 수도 있고 간

접 경로일 수도 있다.

만약 투자자가 h 국에서 s 국으로 바로 투자하였다면, 즉 직접 투자 경로 $h \rightarrow s$ 를 선택하였다면, 투자자가 거주국에서 받는 세후소득은 $m(1-t_{sh})(1-t_h)$ 만큼이 된다. 원천국에서 거주국으로 배당을 보낼 때 t_{sh} 의 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고, 거주국에서 t_h 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법인소득세로,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로 볼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h 국에서 s 국으로 투자하면서 $i, \dots, j$ 등의 국가에 도관(conduit)회사를 만들고 이를 거쳐 투자하였다면, 즉 간접 투자 경로 $h \rightarrow i \rightarrow \dots \rightarrow j \rightarrow s$ 를 선택하였다면, 거주국에서의 세후소득은 $m(1-t_{sj})(1-t_j) \dots (1-t_i)(1-t_{ih})(1-t_h)$ 이 된다. 원천국에서 경유국 j 로 배당을 보낼 때 t_{sj} 의 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고, 경유국 j 에서 t_j 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경유국을 거쳐 배당이 거주국에 도달할 때까지 원천징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직접 또는 간접 투자 경로에 따른 세후소득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세후소득을 비교하여 세후소득을 극대화하는(즉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를 찾을 때, 소득 m 과 거주국 세율 t_h 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 두 변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분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m = 1$ 로 정규화하고, $t_h = 0$ 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직접 투자 경로 $h \rightarrow s$ 에서의 세후소득은 $(1-t_{sh})$ 이 되고, 간접 투자 경로 $h \rightarrow i \rightarrow \dots \rightarrow j \rightarrow s$ 에서의 세후소득은 $(1-t_{sj})(1-t_j) \dots (1-t_i)(1-t_{ih})$ 이 된다. 예를 들어, 간접 투자 경로에서

2) 이러한 가정과 달리, 거주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거주국 세율(공제한도)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간접 투자 경로를 이용한 세금 최소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절약한 만큼 거주국에서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투자자의 거주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경유국이 j 국으로 하나만 있다면, 즉 투자 경로가 $h \rightarrow j \rightarrow s$ 로 주어지면, 세후소득은 $(1 - t_{sj})(1 - t_j)(1 - t_{jh})$ 이 된다.

만약 투자자의 거주국, 원천국, 소득이 모두 주어졌다면, 투자자가 세후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뿐이다.³⁾ 거주국과 원천국의 조합과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의 세율이 주어지면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최적화 이론에서, 경로의 비용을 경로를 구성하는 개별 링크를 통과하는 비용의 합으로 정의하는 경우, 플로이드-워샬(Floyd-Warshal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든 출발 및 도착 노드의 조합에 대해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 이 알고리즘은 노드 개수 n 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횟수만큼 연산하는, 즉 $O(n^3)$ 의 효율성을 보인다. 하지만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비용은 개별 링크를 통과하는 비용의 합이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 경로에서 이전 단계까지 세금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빼는 방식으로 다음 단계에서의 세후소득을 정의하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플로이드-워샬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을 수는 없다.

이제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논의한다. 이 문제에서는 거주국과 원천국의 쌍이 주어지고, 세율에 대한 정보가 세율 매트릭스의 형태로 주어진다. 세율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지금은 우선 행렬 $[t_{ij}]$ 로서 원소 t_{ij} 가 국가 i 에 있는 단체가 국가 j 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소득을 송금할 때 국가 i 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의미한다고 말해두기로 한다.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알고

3) 물론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소득원천국)을 어디로 고르느냐에 따라 투자 및 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4) Thomas H. Cormen et al., *Introduction to Algorithms*, The MIT Press, 2001.

5) 예를 들어, 소득 100에 대해 세율 20%로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낸다면, 세후소득이 $60(=100-20-2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64(=(100-20)(100-20))$ 가 된다.

리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주어진 거주국-원천국 조합에 대해 제약 조건하에서 가능한 모든 투자 경로를 나열한다. 그리고 세율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각 투자 경로에서 세후소득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세후소득의 최댓값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최댓값을 달성하는 투자 경로를 판별하여 결과로 보여준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나열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초보적인 완전 탐색(exhaustive search)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이러한 완전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거주국과 원천국 사이에 몇 개까지 경유국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투자 경로의 가짓수가 대략적으로 총 국가 수의 자승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만약 모두 100개의 국가가 있고, 경유국을 최대 하나까지만 고려한다면, 각 거주국-원천국 조합에 대해 1개의 직접 경로와 98개의 간접 경로를 비교해야 한다. 경유국을 최대 둘까지 고려한다면, 1개의 직접 경로, 98개의 경유국 하나만 통과하는 간접 경로, $9,506(=98 \times 97)$ 개의 경유국 둘을 통과하는 간접 경로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을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의 가짓수인 $9,900(=100 \times 99)$ 가지만큼 반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유국이 최대 하나인 경우 약 100^3 번의 연산을 해야 하고, 경유국이 최대 둘인 경우 약 100^4 번의 연산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가능한 투자 경로에 대해 제약 조건을 설정하여 경유국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약 쇼핑을 통한 세금 최소화가 목적인 경우, 경유국을 최대 하나만 허용하더라도,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성훈·안종석(2014)에 따르면, 각각의 원천국에서 가장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어도 하나의 배당소득 비과세 국가에 적용하고, 각 국가에서의 소득세율이 충분히 작다면,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최대 하나의 경유국이 존재한다. 즉 직접 투자 경로와 경유국을 하나만 거치는 간접 투자 경로들을 비교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판별할 수 있다.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경유국이 최대 하나까지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하에서 우리의 알고리즘은 국가 수 n 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횟수만큼 연산하는, 즉 $O(n^3)$ 의 효율성을

보인다.

그리고 간접 투자 경로의 경유국 j 에서 내야 하는 법인소득세율 t_j 는 모두 1%라고 가정한다. 경유국에서의 법인소득세율을 낮게 가정하는 것은 세금 최소화 경로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의 효과를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만약 경유국에서의 세율을 0%로 가정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경유국을 더해 경로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정수 값인 1%로 세율을 가정한다. 한편 현실에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주요 경유국들은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도관 회사로 활용되는 지주회사나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경유국에서 부담할 법인소득세율이 우리의 가정처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달리 경유국 j 에서의 법인소득세 부담을 온전히 고려하고자 한다면, 세율 t_j 를 명목세율로 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가 되는 데 있어 직접 경로가 간접 경로에 비해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명목법인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경감되는 원천징수세율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t_j 를 실효세율로 가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 분석 대상 국가가 많고, 국가들 중에 개발도상국이나 조세회피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효세율을 추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2. 세율 매트릭스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정보를 세율 매트릭스로 정리한다. 세율 매트릭스 $[t_{ij}]$ 는 모든 가능한 지급국-수취국의 쌍에 대해 지급국에서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정보를 행렬로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원소 t_{ij} 는 지급국 i 에 있는 단체가 수취국 j 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지급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의 세율을 의미한다. 이때의 세율은 각 국가의 세법,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세법과 조세조약에 대한 정보는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와 PwC Worldwide Tax Summaries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⁶⁾ 세율 정보의 기준 시점은 2015년 8월 말이지만,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인 조약 이외에도, 발효 대기 중인 일부 조약도 감안하여 세율을 정하였다. 세율 매트릭스에는 모두 70개국을 포함하였으며, 국가 목록 및 약칭 코드는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1〉 분석 대상 국가 및 코드

Argentina (AR)	Australia (AU)	Austria (AT)	Belgium (BE)	Bermuda (BM)
Brazil (BR)	Bulgaria (BG)	Canada (CA)	Cayman (KY)	Chile (CL)
China (CN)	Colombia (CO)	Croatia (HR)	Cyprus (CY)	Czech Republic (CZ)
Denmark (DK)	Ecuador (EC)	Egypt (EG)	Estonia (EE)	Finland (FI)
France (FR)	Germany (DE)	Gibraltar (GI)	Greece (GR)	Guernsey (GG)
Hong Kong (HK)	Hungary (HU)	Iceland (IS)	India (IN)	Indonesia (ID)
Ireland (IE)	Israel (IL)	Italy (IT)	Japan (JP)	Korea (KR)
Latvia (LV)	Lithuania (LT)	Luxembourg (LU)	Malaysia (MY)	Malta (MT)
Mauritius (MU)	Mexico (MX)	Netherlands (NL)	New Zealand (NZ)	Norway (NO)
Panama (PA)	Peru (PE)	Philippines (PH)	Poland (PL)	Portugal (PT)
Romania (RO)	Russia (RU)	Saudi Arabia (SA)	Singapore (SG)	Slovakia (SK)
Slovenia (SI)	South Africa (ZA)	Spain (ES)	Sweden (SE)	Switzerland (CH)
Taiwan (TW)	Thailand (TH)	Turkey (TR)	Ukraine (UA)	United Arab Emirates (AE)
United Kingdom (GB)	United States (US)	Uruguay (UY)	Venezuela (VE)	Vietnam (VN)

자료: 저자작성

세율 매트릭스 $[t_{ij}]$ 에서 각 원소 t_{ij} 를 다음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첫째, 지급국 i 와 수취국 j 가 모두 EU 모자회사 과세규정(EU Pa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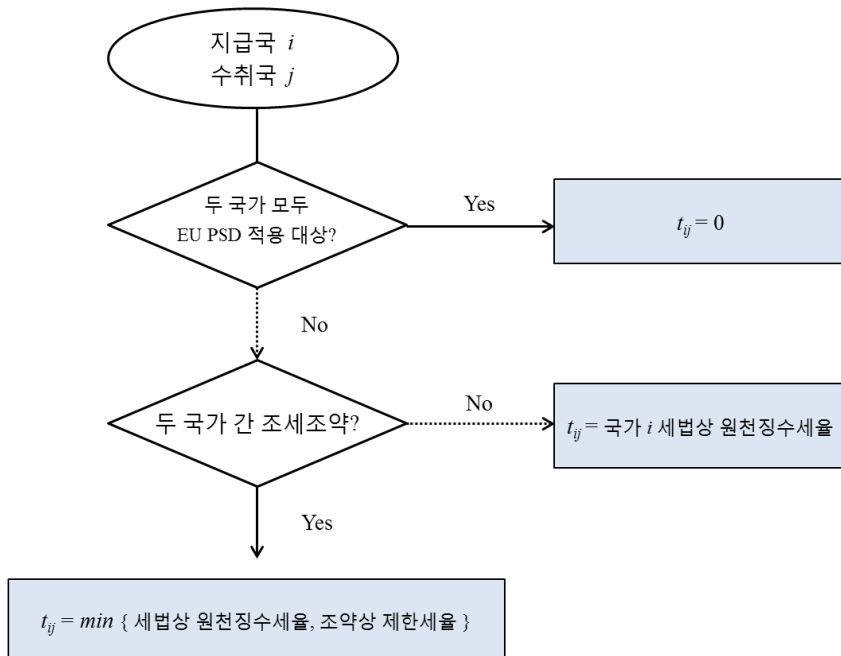
6)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dits.deloitte.com>) 및 PwC Worldwide Tax Summaries(<http://taxsummaries.pwc.com/uk/taxsummaries/wwts.nsf>)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표로 작성하였다.

Subsidiary Directive; EU PSD)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지 따진다. 이 규정의 대상국가는 EU, EEA 회원국과 스위스이다. <표 II-2>는 EU와 EEA 회원국을 보여준다. 두 나라 i 와 j 가 모두 EU PSD 적용 대상이면, $t_{ij} = 0$ 이다.

둘째, 두 나라 중에서 적어도 한 나라가 EU PSD 적용 대상이 아니면, 두 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는지 따진다. 두 나라 i 와 j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다면, t_{ij} 를 국가 i 의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정한다.

셋째, 두 나라 중에서 적어도 한 나라가 EU PSD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두 나라 i 와 j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다면, 이 조약에 따라 i 에서 j 로 배당을 지급할 때 i 에서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의 제한세율과 i 에서의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으로 t_{ij} 를 정한다. [그림 II-1]은 세율 매트릭스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II-1] 세율 매트릭스 작업 흐름도



자료: 저자작성

〈표 II-2〉 EU/EEA 국가목록

Countries		EU	EEA
Austria	AT	○	○
Belgium	BE	○	○
Bulgaria	BG	○	○
Croatia	HR	○	○
Cyprus	CY	○	○
Czech Republic	CZ	○	○
Denmark	DK	○	○
Estonia	EE	○	○
Finland	FI	○	○
France	FR	○	○
Germany	DE	○	○
Greece	GR	○	○
Hungary	HU	○	○
Iceland	IS	—	○
Ireland	IE	○	○
Italy	IT	○	○
Latvia	LV	○	○
Liechtenstein	LI	—	○
Lithuania	LT	○	○
Luxembourg	LU	○	○
Malta	MT	○	○
Netherlands	NL	○	○
Norway	NO	—	○
Poland	PL	○	○
Portugal	PT	○	○
Romania	RO	○	○
Slovakia	SK	○	○
Slovenia	SI	○	○
Spain	ES	○	○
Sweden	SE	○	○
United Kingdom	GB	○	○

자료: <https://www.gov.uk/eu-eea>, 접속일자: 2015. 07. 21.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 조항을 보면, 지분율 및 지분 보유 기간에 따라 제한세율을 여러 단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조약을 보면,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5%가 되지만, 지분율 25% 미만이면 세율이 15%가 된다. 이렇게 조약에 다단계 제한세율 규정이 있는 경우,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에 맞도록, 가장 낮은 세율로 t_{ij} 를 정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한 조항 이외에 혜택제한 조항이 독립적으로 있고, 여기서 규정하는 수혜 대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인도, 칠레 등의 국가가 일부 조세조약에서 혜택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혜택제한 조항의 효과를 분석하기보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조약의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기금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정하지 않고, 차상위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예로 미국과 헝가리 사이의 조약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적인 세율 매트릭스 작업 규칙에 더하여, 개별적인 원소의 값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다.

배당에 대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연방제 국가에서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개별 국가의 주마다 원천징수세 제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원천징수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DDT)를 세율 15%로 부과한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세율을 0%로 가정하기보다는 15%로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국내 법인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국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이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frank dividends”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원천징수세율을 0이라고 가정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30%이지만, 조건에 따라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필리핀의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15%로 가정하였다.

벨기에와 아일랜드에서는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를 면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약에서는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15%로 정하고 있지만,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배당을 지급할 때는 세법상 면세 규정의 혜택을 받아 세율이 0%가 된다.

덴마크는 국내 세법에 의해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원천세율을 15%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덴마크의 조세조약 중에서 조약상 제한세율이 15%보다 높은 국가는 브라질과 그리스뿐이다. 그런데 덴마크와 그리스는 모두 EU PSD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덴마크 세법 조항의 혜택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덴마크-브라질의 세율은 종전의 25%를 15%로 조정하였고, 덴마크-그리스의 세율은 종전의 18%를 0%로 조정하였다.

2015년 8월 기준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율 매트릭스 작업 결과는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가장 왼쪽의 1열에 있는 국가는 지급국을 의미하고, 가장 위쪽의 1행에 있는 국가는 수취국을 의미한다. 지급국과 수취국이 동일한 대각 원소의 경우 값을 0으로 표기하였다.

3.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

분석 대상 70개국에 대해 세율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경유국에서의 세율이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1%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를 알아본다. 이어서 경유국 세율이 명목 법인소득세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의 결과를 살펴본다.

가. 경유국 세율 1%로 가정한 경우

경유국에서의 세율이 1%라고 가정하고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더니,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에서 18,480개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직접 투자 경로는 2,980개이고, 간접 투자 경로는 15,500개이다.

우리나라가 원천국일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모두 467개이다. 이 중에서 직접 경로는 25개이고, 간접 경로는 442개이다. 직접 경로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주국은 오스트리아(AT), 불가리아(BG), 캐나다(CA), 칠레(CL), 중국(CN), 크로아티아(HR), 체코(CZ), 에콰도르(EC), 독일(DE), 그리스(GR), 헝가리(HU), 아이슬란드(IS), 이스라엘(IL), 라트비아(LV), 말레이시아(MY), 멕시코(MX), 파나마(PA), 폴란드(PL), 러시아(RU), 사우디아라비아(SA), 슬로베니아(SI), 남아프리카공화국(ZA), 우크라이나(UA), 우루과이(UY), 베네수엘라(VE) 등 모두 25개국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 442개 중에서 주요 자본수출국(거주국)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자. 미국, 일본, 프랑스, 또는 영국

이 거주국이면, 멕시코가 유일한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가 존재한다.

미국(US) → 멕시코(MX) → 한국(KR)

일본(JP) → 멕시코(MX) → 한국(KR)

프랑스(FR) → 멕시코(MX) → 한국(KR)

영국(GB) → 멕시코(MX) → 한국(KR)

주요 자본수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멕시코가 유일한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발견이다. 그런데 세율 매트릭스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멕시코 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배당에 과세하지 않고, 멕시코는 다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과의 조약에 의해 멕시코에서 이 국가들로 보내는 배당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가 유일한 경유국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3]은 우리나라가 원천국이고 경유국의 세율이 1%인 경우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보여준다. <표 II-3>은 세금 최소화 경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국가)의 네트워크 중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사용한 네트워크 중심도는 여섯 가지이고,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⁷⁾ 먼저 In-Degree 중심도는 각각의 노드로 들어오는 링크의 수를 의미하고, Out-Degree 중심도는 노드에서 나가는 링크의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원천국일 때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유국을 찾으려면, In-Degree 중심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경유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아 목적지인 우리나라로 중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거주국일 때는 Out-Degree 중심도를 기준으로 경유국의 중요도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유국의 역할은 우리나라로

7) 시중에 네트워크의 개념 및 중심도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책이 있다. 그중에서도 Matthew O. Jackson(2008) Social and Economic Net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는 경제학 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부터 받은 투자를 목적지인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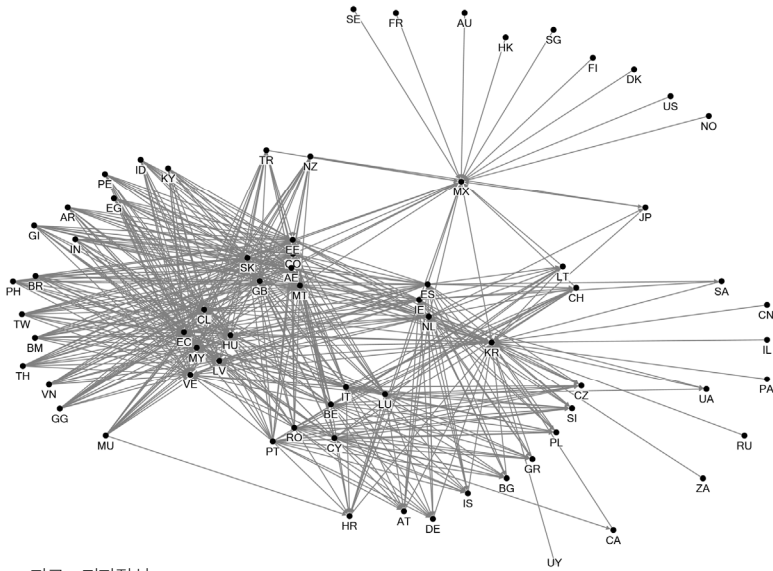
그리고 Betweenness 중심도는 각각의 노드가 다른 두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계산한다.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는 최단 경로가 여럿 존재할 수 있다. 경로 개수의 역수를 경유 노드의 비중으로 정의하여, 이 비중을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에 대해 합계하여 Betweenness 중심도를 정의한다.

이어서 Closeness 중심도는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최단 경로의 길이를 합계하고 역수를 취한 것이다.

한편 Eigenvector 중심도는 각 노드의 중심도를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재귀적인 것이라 과연 중심도가 잘 정의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재귀적 계산 방식의 해가 일정 조건하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한 행렬의 eigenvector 중에서 하나와 같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노드의 중심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로부터 계산한 한 노드의 중심도가 다시 다른 노드의 중심도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반복적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한 번에 행렬의 eigenvector를 계산하여 중심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PageRank 중심도는 eigenvector 중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흥미롭게도 Google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순위가 PageRank 중심도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네트워크 중심도가 크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II-3>의 중심도 계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원천국이고 경유국 세율을 1%로 적용하면, 에스토니아, 몰타, 영국, 헝가리 등의 국가가 주요 경유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나라 외에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 네트워크 중심도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5%)을 적용하고 이들 나라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멕시코가 중요한 경유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림 II-3]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세율 1%



자료: 저자작성

〈표 II-3〉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원천, 경유국 세율 1%

국가	코드	In-Degree	Betweenness	Closeness	Eigenvector	PageRank
콜롬비아	CO	26	185.0	0.009	0.026	1.837
에스토니아	EE	26	185.0	0.009	0.026	1.837
몰타	MT	26	185.0	0.009	0.026	1.837
슬로바키아	SK	26	185.0	0.009	0.026	1.837
아랍에미리트	AE	26	185.0	0.009	0.026	1.837
영국	GB	26	185.0	0.009	0.026	1.837
칠레	CL	26	118.6	0.008	0.025	1.728
에콰도르	EC	26	118.6	0.008	0.025	1.728
헝가리	HU	26	118.6	0.008	0.025	1.728
라트비아	LV	26	118.6	0.008	0.025	1.728
말레이시아	MY	26	118.6	0.008	0.025	1.728
베네수엘라	VE	26	118.6	0.008	0.025	1.728
멕시코	MX	23	1189.5	0.009	0.017	3.073
크로아티아	HR	10	15.2	0.007	0.013	0.802

자료: 저자작성

한편 우리나라가 거주국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모두 302개이다. 이 중에서 직접 경로는 37개이고, 간접 경로는 265개이다. 직접 경로로 투자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원천국은 아르헨티나(AR), 호주(AU), 벨기에(BE), 버뮤다(BM), 브라질(BR), 케이만(KY), 칠레(CL), 중국(CN), 콜롬비아(CO), 사이프러스(CY), 에콰도르(EC), 에스토니아(EE), 지브롤터(GI), 건지(GG), 홍콩(HK), 헝가리(HU), 인도(IN), 아일랜드(IE), 라트비아(LV), 말레이시아(MY), 몰타(MT), 모리셔스(MU), 멕시코(MX), 뉴질랜드(NZ), 페루(PE), 필리핀(PH), 러시아(RU), 싱가포르(SG), 슬로바키아(SK), 남아프리카공화국(ZA), 태국(TH), 우크라이나(UA), 아랍에미리트(AE), 영국(GB), 우루과이(UY), 베네수엘라(VE), 베트남(VN) 등 모두 37개국이다.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 265개 중에서 주요 투자대상국(원천국)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자.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호주, 벨기에,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중에서 하나를 경유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중에서 하나를 경유하면 된다. 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영국 중에서 하나를 경유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KR) → 벨기에(BE) → 폴란드(PL)
 한국(KR) → 사이프러스(CY) → 폴란드(PL)
 한국(KR) → 에스토니아(EE) → 폴란드(PL)
 한국(KR) → 헝가리(HU) → 폴란드(PL)
 한국(KR) → 아일랜드(IE) → 폴란드(PL)
 한국(KR) → 라트비아(LV) → 폴란드(PL)
 한국(KR) → 몰타(MT) → 폴란드(PL)
 한국(KR) → 슬로바키아(SK) → 폴란드(PL)
 한국(KR) → 아랍에미리트(AE) → 폴란드(PL)
 한국(KR) → 영국(GB) → 폴란드(PL)

프랑스와 독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폴란드의 경우와 비슷한 경유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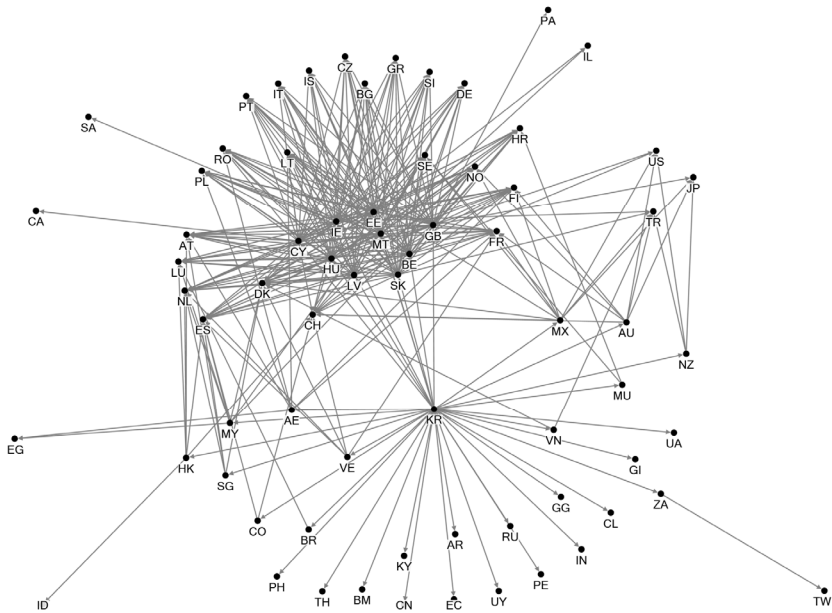
[그림 Ⅱ-4]는 우리나라가 거주국이고 경유국 세율이 1%인 경우의 세금 최소화 경로를 보여준다. <표 Ⅱ-4>는 세금 최소화 경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국가)의 네트워크 중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중심도가 크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Ⅱ-4>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거주국이고 경유국에서 1%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국,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몰타,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벨기에, 라트비아, 헝가리, 홍콩 등이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주요 경유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슬로바키아, 몰타,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헝가리는 EU PSD 적용 대상이라 유럽 국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으로 받아갈 때 세율 0%를 적용받고, 다시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배당을 보낼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홍콩도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만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배당을 보낼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EU PSD 적용 대상이다. 그러므로 선별적으로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도 경유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원천국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멕시코는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II-4]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세율 1%



자료: 저자작성

〈표 II-4〉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세율 1%

국가	코드	Out-Degree	Betweenness	Closeness	Eigenvector	PageRank
영국	GB	25	424.6	0.008	0.031	2,614
아일랜드	IE	24	351.8	0.008	0.031	2,493
슬로바키아	SK	23	215.8	0.008	0.031	2,293
몰타	MT	23	239.3	0.008	0.031	2,314
에스토니아	EE	23	239.3	0.008	0.031	2,314
사이프러스	CY	23	308.3	0.008	0.031	2,380
벨기에	BE	23	216.5	0.008	0.031	2,292
라트비아	LV	22	172.3	0.008	0.031	2,181
헝가리	HU	22	172.3	0.008	0.031	2,181
멕시코	MX	10	93.8	0.007	0.012	1,244
말레이시아	MY	7	95.1	0.006	0.010	0.973
호주	AU	7	62.8	0.006	0.008	0.985
아랍에미리트	AE	7	91.8	0.006	0.010	0.957
홍콩	HK	6	155.7	0.006	0.009	0.965

자료: 저자작성

나.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한 경우

경유국에서의 세율이 명목세율과 같다고 가정하고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더니, 모든 가능한 거주국-원천국 조합에서 13,541개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직접 투자 경로는 3,630개이고, 간접 투자 경로는 9,911개이다. 경유국에서 1% 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직접 투자 경로의 수는 늘어나고 간접 투자 경로의 수는 줄어들었다. 경유국에서의 명목 법인소득세율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명목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세율이 1%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간접 투자 경로의 세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천국일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모두 101개이다. 이 중에서 직접 경로는 34개이고, 간접 경로는 67개이다. 직접 경로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주국은 오스트리아(AT), 불가리아(BG), 캐나다(CA), 칠레(CL), 중국(CN), 콜롬비아(CO), 크로아티아(HR), 체코(CZ), 에콰도르(EC), 에스토니아(EE), 독일(DE), 그리스(GR), 헝가리(HU), 아이슬란드(IS), 이스라엘(IL), 일본(JP),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말레이시아(MY), 몰타(MT), 멕시코(MX), 파나마(PA), 폴란드(PL), 러시아(RU), 사우디아라비아(SA), 슬로바키아(SK), 슬로베니아(SI), 남아프리카공화국(ZA), 스위스(CH), 우크라이나(UA), 아랍에미리트(AE), 영국(GB), 우루과이(UY), 베네수엘라(VE) 등 모두 34개국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 67개 모두는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조약이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을 5%로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 경로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주국의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는 간접 경로가 직접 경로와 동일하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이고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최소화 경로를 보여준다. <표 II-5>는 세금 최소화 경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국가)의 네트워크 중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거주국이고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모두 200개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찾았는데, 이 중에서 직접 경로가 52개이고, 간접 경로가 148개였다. 직접 경로로 투자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원천국은 아르헨티나(AR), 호주(AU), 벨기에(BE), 버뮤다(BM), 브라질(BR), 불가리아(BG), 캐나다(CA), 케이만(KY), 칠레(CL), 중국(CN), 콜롬비아(CO), 크로아티아(HR), 사이프러스(CY), 체코(CZ), 에콰도르(EC), 에스토니아(EE), 독일(DE), 지브롤터(GI), 그리스(GR), 건지(GG), 홍콩(HK), 헝가리(HU), 아이슬란드(IS), 인도(IN), 인도네시아(ID), 아일랜드(IE), 이스라엘(IL), 일본(JP), 라트비아(LV), 말레이시아(MY), 몰타(MT), 모리셔스(MU), 멕시코(MX), 뉴질랜드(NZ), 페루(PE), 필리핀(PH), 러시아(RU), 사우디아라비아(SA), 싱가포르(SG), 슬로바키아(SK), 슬로베니아(SI), 남아프리카공화국(ZA), 스웨덴(SE), 스위스(CH), 태국(TH), 우크라이나(UA), 아랍에미리트(AE), 영국(GB), 미국(US), 우루과이(UY), 베네수엘라(VE), 베트남(VN) 등 모두 52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 148개 모두는 아랍에미리트, 건지, 버뮤다, 케이만, 헝가리 중에서 한 곳을 경유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가 존재한다.

한국(KR) → 아랍에미리트(AE) → 인도(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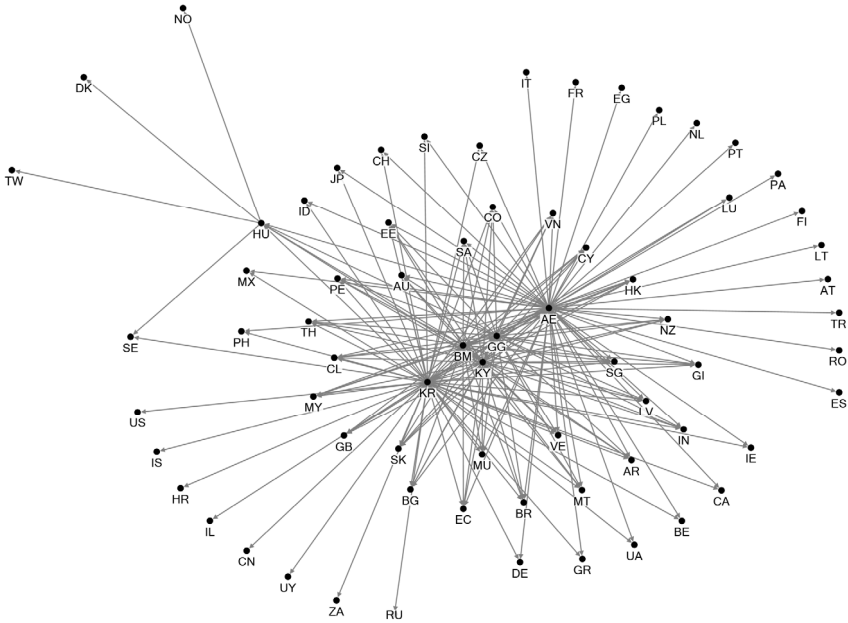
한국(KR) → 건지(GG) → 인도(IN)

한국(KR) → 버뮤다(BM) → 인도(IN)

한국(KR) → 케이만(KY) → 인도(IN)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타이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헝가리를 경유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다섯 곳의 경유국은 모두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림 II-6]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명목세율



자료: 저자작성

〈표 II-6〉 네트워크 중심도: 대한민국 거주, 경유국 명목세율

국가	코드	Out-Degree	Betweenness	Closeness	Eigenvector	PageRank
아랍에미리트	AE	56	2333.0	0.012	0.062	10.483
건지	GG	30	201.0	0.009	0.051	4.608
버뮤다	BM	29	160.0	0.009	0.051	4.425
케이만	KY	29	160.0	0.009	0.051	4.425
헝가리	HU	4	420.0	0.008	0.020	1.868
사이프러스	CY	0	0.0	0.007	0.019	0.833
에스토니아	EE	0	0.0	0.007	0.019	0.833
지브롤터	GI	0	0.0	0.007	0.019	0.833
홍콩	HK	0	0.0	0.007	0.019	0.833
라트비아	LV	0	0.0	0.007	0.019	0.833
몰타	MT	0	0.0	0.007	0.019	0.833
싱가포르	SG	0	0.0	0.007	0.019	0.833
슬로바키아	SK	0	0.0	0.007	0.019	0.833
영국	GB	0	0.0	0.007	0.019	0.833

자료: 저자작성

[그림 Ⅱ-6]은 우리나라가 거주국이고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최소화 경로를 보여준다. <표 Ⅱ-6>는 세금 최소화 경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국가)의 네트워크 중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4. 시사점

국제적인 투자자 및 기업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세조약 세율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투자 경로의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70개국 사이에는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접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유국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경유국의 세율을 1%로 가정한 경우, 한국-멕시코 조약이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0%로 규정하고, 멕시코와 다른 주요 자본수출국 사이의 조약이 다시 제한세율을 0%로 규정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0%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경유국의 세율을 명목 법인소득세율로 가정한 경우, 한국-아랍에미리트 조약이 제한세율을 5%로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법인소득세와 배당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한 경유국이 될 수 있었다. 현실에서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는 투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 두 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는 가정에 따라 다양한 경유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국 세율이 1%인 경우 영국, 아이

랜드, 벨기에, 헝가리 등이 주요 경유국이었다. 영국과 헝가리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있지만,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 건지, 버뮤다, 케이만, 헝가리가 경유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 나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모든 분석 대상 국가 사이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우리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경유국 세율을 1%로 가정하고, 거주국이 멕시코, 원천국이 러시아인 경우였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경유했을 때의 세율이 1%라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조세조약 쇼핑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일 때이다. 이러한 경우 경유국 세율에 따라 멕시코나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반면 우리가 흔히 주요 경유국이라고 알고 있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과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 또는 헝가리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각각 26개 존재하고,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가 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 헝가리, 스위스를 경유하는 투자 경로를 제외하고는, 흔히 조약 쇼핑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던 경유국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 경로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세조약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세조약 쇼핑 방지를 감안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해온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천국으로서 조세조약 쇼핑 방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벨기에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두 나라는 정보교환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국내 세법으로 정하였다. 물론 이 두 나라의 경우처럼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로 배당을 지급할 때, 국내 세법에 의해 제한 세율을 5%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세법에 의해 세율을 인하하면, 조약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약국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Ⅲ. 조세조약 쇼핑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

앞에서 각국의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제한세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런데 네트워크 분석만으로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투자자가 이러한 경로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인지, 또는 반대로, 과세당국이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투자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해야 한다.

조세조약 쇼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거주국이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거꾸로 투자자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조약 쇼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정확히 예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와 과세당국이 각각 사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전략적인 행동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경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와 간접 경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해서 (즉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확률을 반영해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게임이론 모형을 만들고 균형을 분석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투자자가 조약 쇼핑을 위해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얼마나 빈번히 이용할 것인가? 둘째, 이처럼 조약 쇼핑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과세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셋째, 조약 쇼핑은 원천국의 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투자자의 거주국에 따라 국외소득 과세면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달리 설정될 경우, 투자자의 조약 쇼핑 행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1. 모형

이 모형에는 투자자와 과세당국, 두 경기자(의사결정주체)가 있다. 투자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법인)일 수도 있다. 투자자는 h 국에 거주하며 s 국에 투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s 국에서 배당소득 m 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이 소득을 모두 h 국으로 송금할 예정이다. 여기서 s 국은 원천국으로, h 국은 거주국으로 일컫는다. 투자자의 타입(type)을 (h, m) 으로 나타낸다. 타입 (h, m) 의 투자자는 배당소득 m 을 거주국 h 로 송금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즉 투자자는 거주국에서의 세 후소득(net-of-tax)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투자 경로를 h 국을 출발하여 s 국에 도착하는 국가들의 수열 $h, i, \dots, j, s$ 로 정의한다. 투자 경로를 줄여서 ‘경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어진 경로 $h, i, \dots, j, s$ 에서 i 국부터 j 국까지의 국가들을 경유국(pass-through country)이라 부른다. 투자자의 전략은, $b(\cdot)$ 로 나타내며, 각각의 타입 (h, m) 을 경로 $b(h, m)$ 로 연결하는 함수로 정의한다. 만약 $b(h, m) = h, i, \dots, j, s$ 이면, 타입 (h, m) 의 투자자가 간접 경로를 선택하여 h 국으로부터 $i, \dots, j$ 등의 경유국을 거쳐 s 국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투자자는 경유국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투자를 중개한다. 만약 $b(h, m) = h, s$ 이면, 타입 (h, m) 의 투자자는 직접 경로를 선택하여 h 국에서 s 국에 바로 투자한다.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s 국에서 h 국으로 보낼 때의 송금 경로는 투자 경로에 있는 국가들의 역순서로 결정된다.

원천국의 과세당국은 이처럼 자국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비용 c 를 들여 투자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조사 비용 c 가 과세당국의 타입을 나타내며, 이러한 타입은 과세당국이 얼마나 자주 투자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과세당국의 전략은, $a(\cdot)$ 로 나타내며, 각각의 타입 c 를 세무조사 여부를 의미하는 행동 $a(c) \in 0,1$ 로 연결하는 함수로 정의한다. 만약 $a(c) = 1$ 이면, 타입 c 의 과세당국이 투자자를 세무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거주국과 소득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즉 투자자는 자신의 타입 (h,m) 을 알지만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타입을 모를 수 있다.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타입에 대해 주관적인 믿음(belief)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확률분포함수 π 로 표현한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비용(또는 세무조사에 대한 적극성을 거꾸로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자신의 타입 c 를 알지만 투자자는 과세당국의 타입을 모를 수 있다. 투자자는 과세당국의 타입에 대해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확률분포함수 ϕ 로 나타낸다.

과세당국과 투자자는 투자자의 경로 선택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율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즉 국가 i 에서의 세율 t_i 를 알고 있고, 두 국가 i 와 j 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줄여서 조세조약 세율, t_{ij} 도 알고 있다. 만약 i 국에 소재한 법인이 j 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배당을 보내면, i 국이 세율 t_{ij} 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

주어진 경로 $b(h,m)$ 에 대해 원천국에서의 원천징수세율을 $w(b(h,m))$ 으로 나타낸다. 만약 $b(h,m) = h,s$ 이면, 즉 직접 경로이면, 원천징수세율은 $w(b(h,m)) = t_{sh}$ 이다. 만약 $b(h,m) = h,i,\dots,j,s$ 이면, 즉 간접 경로이면, 원천징수세율은 $w(b(h,m)) = t_{sj}$ 이다.

주어진 경로 $b(h,m)$ 에 대해 거주국 이외의 국가(외국)에서 납부할 세금을 모두 고려한 외국 세율을 $f(b(h,m))$ 으로 나타낸다. 만약 직접 경로 $b(h,m) = h,s$ 이면, 외국 세율은 $f(b(h,m)) = t_{sh}$ 이다. 그리고 만약 간접 경로 $b(h,m) = h,i,\dots,j,s$ 가 주어지면, 외국 세율을 $f(b(h,m)) = 1 - (1 - t_{sj})(1 - t_j) \cdots (1 - t_i)(1 - t_{ih})$ 로 계산한다.

타입 (h, m) 의 투자자가 경로 $b(h, m)$ 을 선택하면, 거주국 h 에서의 세후 소득이 $m(1 - f(b(h, m)))(1 - t_h)$ 이고, 원천국 s 가 거두는 세수입이 $mw(b(h, m))$ 이다. 여기서는 거주국이 소득공제 또는 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소득공제제도에서는 거주국 세율이 $t_h > 0$ 이고, 소득면제 제도에서는 거주국 세율이 $t_h = 0$ 이다. 거주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

과세당국이 투자자에게 징벌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이 $p^* > 0$ 라고 가정하자. 세무조사 행동 $a(c)$ 와 투자 경로 $b(h, m)$ 에 대해 가산 세율을 $p(a(c), b(h, m))$ 으로 나타낸다. 만약 $a(c) = 1$ 이고 $b(h, m) = h, i, \dots, j, s$ 이면, 가산 세율은 $p(a(c), b(h, m)) = p^*$ 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세율이 $p(a(c), b(h, m)) = 0$ 이다.

만약 타입 (h, m) 의 투자자가 간접 경로 $b(h, m) = h, i, \dots, j, s$ 를 선택하고, 타입 c 의 과세당국이 투자자를 세무조사하기로 선택하면, 즉 $a(c) = 1$ 이면, 과세당국은 투자자에게 가산세 mp^* 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과세당국에 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타입 c 의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비용 $ca(c)$ 를 부담한다.

요약하면, 투자자의 타입에 대한 확률분포 π 와 자신의 타입 c 가 주어졌을 때, 과세당국(경기자 A)의 보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_A(a(\cdot), b(\cdot); c) = E_\pi[mw(b(\cdot)) + mp(a(c), b(\cdot)) - ca(c)]$$

그리고 과세당국의 타입에 대한 확률분포 ϕ 와 자신의 타입 (h, m) 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경기자 B)의 보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_B(a(\cdot), b(\cdot); h, m) = E_\phi[m(1 - f(b(h, m)))(1 - t_h) - mp(a(\cdot), b(h, m))]$$

이 모형에서 과세당국과 투자자는 불완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하에서의 게임(베이지안 게임, Bayesian game)을 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

서는 투자자를 세무조사할지 선택할 때 투자자의 타입과 전략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과세당국은 자신의 타입 c 만을 사적인 정보로 알 뿐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경로를 선택할 때 과세당국의 타입과 전략에 대해 알지 못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타입 (h, m) 만을 사적인 정보로 알 뿐이다.

2. 분석

앞에서 조세조약 쇼핑이 일어나는 상황을 베이지안 게임으로 묘사했다. 여기서는 이 게임에서 일어나는 경기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게임의 균형을 분석한다. 베이지안 게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균형 개념인 베이지안 내쉬 균형(Bayesian Nash equilibrium)을 찾는다.

거주국 h 가 주어졌을 때, h 국에서 s 국으로 가는 세금 최소화 경로를 b^* 로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 원천국 s 는 고정되어 있지만, 거주국 h 는 투자자의 타입 (h, m)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거주국 h 와 원천국 s 의 조합이 주어지면 세금 최소화 경로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별 세율과 조세조약 세율에 따라, 세금 최소화 경로는 직접 경로일 수도 있고, 간접 경로일 수도 있다. 물론 주어진 거주국-원천국 조합에 대해 세금 최소화 경로가 여럿 존재할 수도 있다. 세금 최소화 경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미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다.

과세당국과 투자자의 타입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우선 투자자의 거주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1국 또는 2국이고, 1국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간접 경로이고, 2국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직접 경로이다. 투자자의 소득 수준은 m_1 또는 m_2 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타입으로 모두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한편 과세당국의 타입은 c_L 또는 c_H 이고, $c_L < c_H$ 를 가정한다.

투자자의 타입에 대한 과세당국의 믿음은 확률분포 π 로 주어지는데, 투자자의 타입이 모두 네 가지이므로 다음과 같이 쓴다.

$$\pi(1, m_1) = \pi_{11} \quad \pi(1, m_2) = \pi_{12} \quad \pi(2, m_1) = \pi_{21} \quad \pi(2, m_2) = \pi_{22}$$

그리고 $\overline{m} = \pi_{11}m_1 + \pi_{12}m_2$ 로 정의한다. 과세당국의 타입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은 확률분포 ϕ 로 주어지고, 과세당국의 타입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쓴다.

$$\phi(c_L) = \phi_L \quad \phi(c_H) = \phi_H$$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 1. 높은 세무조사 비용이 가산세 기댓값의 최대치보다 더 크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p^* E_\pi[m] < c_H$ 조건이 성립한다.

가정 2. 낮은 세무조사 비용이 간접 경로가 유리한 투자자만 간접 경로를 선택할 때의 가산세 기댓값보다 더 작다. 수식으로 쓰면 $c_L < \overline{m}p^*$ 조건이 성립한다.

가정 3. 낮은 세무조사 비용 타입의 확률로 할인된 가산세율이 세후 수익률의 차이보다 더 크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t_{s1} - f(b^*))(1 - t_1) < \phi_L p^*$ 조건이 성립한다.

먼저 이 게임에서 순수전략(pure-strategy)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높은 세무조사 비용 c_H 타입인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정 1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산세 세수입보다 세무조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균형에서 쓰일 수 있는 과세당국의 순수전략으로 두 가지가 남는다. 타입에 관계없이 항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전략과, 낮은 세무조사 비용 c_L 타입인 과세당국만 세무조사를 하는 (즉 높은 세무조사 비용 c_H 타입인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전략이다.

과세당국이 자신의 타입에 관계없이 항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면, 타입 $(1, m)$ 의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고,

타입 $(2, m)$ 의 투자자는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전략이 최적대응(best response)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없음’ 전략은 최적대응이 아니다. 가정 2에 의해 낮은 세무조사 비용 c_L 타입인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세무조사 비용보다 더 큰 가산세 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세당국이 낮은 비용 c_L 타입이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높은 비용 c_H 타입이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면, 가정 3에 의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타입에 관계없이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대응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과세당국의 전략은 최적대응이 아니다. 투자자가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타입 c_L 의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균형을 구성할 수 있는 두 순수전략이 모두 균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정리 1로 남긴다.

정리 1. 순수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 1에 의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자들이 반드시 혼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혼합전략 균형을 찾아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정 1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가산세 세수입의 최댓값보다 세무조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높은 세무조사 비용 c_H 타입의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입 $(2, m)$ 의 투자자에게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즉 과세당국이 세무조사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경로를 선택

하는 것이 간접 경로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 더 크거나 같은 보수를 준다. 투자자가 2국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고, 직접 경로를 선택한다면 나중에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 처분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직접 경로와 함께 간접 경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간접 경로를 고른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한편 타입 $(1, m)$ 의 투자자에게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간접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열등전략이다. 즉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그러한 선택을 포함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그렇지 않은 전략에 비해 더 작은 보수를 얻는다. 어차피 간접 경로를 선택하면, 그것이 세금을 최소화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과세당국이 다음과 같은 혼합전략 $a^*(\cdot)$ 를 구사한다고 가정하자. 타입 c_L 의 과세당국이 $(t_{s1} - f(b^*))(1 - t_1)/\phi_{LP}^*$ 의 확률로 투자자를 세무조사하고, 타입 c_H 의 과세당국은 전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혼합전략 $a^*(\cdot)$ 를 구사하여, 타입 $(1, m)$ 의 투자자에게 직접 경로 $1, s$ 를 선택하는 것과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 b^* 를 선택하는 것이 서로 무차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u_B(a^*(\cdot), b^*; 1, m) = m(1 - t_{s1})(1 - t_1) = u_B(a^*(\cdot), 1, s; 1, m)$$

달리 말하면, 과세당국이 혼합전략 $a^*(\cdot)$ 를 구사하여, 타입 $(1, m)$ 의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고르거나 직접 경로를 고를 때 동일한 기대 보수를 얻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다음 혼합전략 $b^*(\cdot)$ 를 구사한다고 가정하자. 타입 $(1, m)$ 의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c_L/\overline{mp}^*$ 의 확률로 선택하고, 타입 $(2, m)$ 의 투자자는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한다. 투자자가 혼합전략 $b^*(\cdot)$ 를 구사하면, 타입 c_L 인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동일한 기대 보수를 얻는다. 즉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u_A(1, b^*(\cdot); c_L) = E_\pi[mw(b^*(\cdot))] = u_A(0, b^*(\cdot); c_L)$$

달리 말하면, 투자자가 혼합전략 $b^*(\cdot)$ 를 선택함으로써 타입 c_L 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무차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과세당국과 투자자는 각각 혼합전략 $a^*(\cdot)$ 와 $b^*(\cdot)$ 를 선택하여,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타입의 상대방 경기자가 양의 확률로 선택하는 행동에 대해 무차별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두 혼합전략은 균형을 형성한다. 이 논증 결과를 정리 2로 남긴다.

정리 2. 타입 c_L 의 과세당국이 $(t_{s1} - f(b^*))(1 - t_1)/\phi_L p^*$ 의 확률로 투자자를 세무조사하고, 타입 c_H 의 과세당국은 전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타입 $(1, m)$ 의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c_L/\overline{mp}^*$ 의 확률로 선택하고, 타입 $(2, m)$ 의 투자자는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앞에서 정리 2의 논증 과정을 설명하면서, 타입 c_L 의 과세당국이 얻는 기대 보수와 타입 $(1, m)$ 의 투자자가 얻는 기대 보수를 계산했다. 두 타입의 경기자 모두 양의 확률로 선택할 행동에 대해 동일한 기대 보수를 얻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확률로 행동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기대 보수를 얻는다. 그리고 과세당국의 기대 보수는 타입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투자자의 기대 보수는 타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당국과 투자자의 균형 기대 보수를 계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남겨둔다.

결과 1. (균형보수) 균형 $(a^*(\cdot), b^*(\cdot))$ 에서 타입 c 의 과세당국은 $E_\pi[mw(b^*(\cdot))]$ 를 기대 보수로 얻는데, 이 보수는 과세당국의 타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입 (h, m) 의 투자자는 $m(1 - t_{sh})(1 - t_h)$ 를 기대 보수로 얻는데, 이 보수는 투자자의 타입에 의해 달리 결정된다.

이제 조세조약 쇼핑에 의한, 즉 간접 투자 경로 이용에 따른, 원천국 과세당국의 세수 감소분을 계산한다. 만약 투자자가 자신의 타입에 관계 없이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한다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대 보수 $E_{\pi}[mt_{sh}]$ 를 얻는다. 이 기대 보수는 과세당국이 얻을 수 있는 보수의 최댓값이다.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비용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리 2의 균형 $(a^*(\cdot), b^*(\cdot))$ 에서, 과세당국이 기대 보수 $E_{\pi}[mw(b^*(\cdot))]$ 를 얻는다는 것을 보였다. 거주국 1과 원천국 s 사이에 모두 ℓ 가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가 있을 때, 각 경로에서 마지막 경유국을 j_k 로, 균형에서 각각의 경로를 선택할 확률을 q_k 로 표시하고, 균형 기대 보수를 풀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_{\pi}[mw(b^*(\cdot))] = E_{\pi}[mt_{sh}] - \bar{m} \sum_{k=1}^{\ell} q_k (t_{s1} - t_{sj_k})$$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얻을 수 있는 기대 보수의 최댓값과 균형 기대 보수 사이의 차이를, 투자자의 간접 경로 이용에 따른 원천국에서의 세수입 손실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남겨둔다.

결과 2. (세수손실) 조세조약 쇼핑에 의해 원천국의 세수입이 $\bar{m} \sum_{k=1}^{\ell} q_k (t_{s1} - t_{sj_k})$ 만큼 감소한다. 만약 균형에서 타입 $(1, m)$ 의 투자자가 ℓ 가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모두 같은 확률로 선택하면, 즉 $k = 1, \dots, \ell$ 에 대해 $q_k = c_L / \ell \bar{m} p^*$ 이면, 원천국의 세수입이 $(c_L / p^*)(1/\ell) \sum_{k=1}^{\ell} (t_{s1} - t_{sj_k})$ 만큼 감소한다.

결과 2에서 제시한 원천국 세수입 감소분 추정식 중에서 두 번째 것을 보면, 직접 경로를 이용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t_{s1} 과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t_{sj_k} 의 차이를 가능한 ℓ 개의 세금 최소화

화 간접 투자 경로에 대해 평균한 값이 추정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값을 평균 세율 스프레드(average tax rate spread)로 부르기로 한다.

정리 2의 균형에서 과세당국이 혼합전략을 이용하여 투자자에 대해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약 과세당국이 어떤 법적, 행정적 제약에 의해 이와 같은 확률적 세무조사를 구사하지 못하고, 투자자를 항상, 즉 확률 1로, 의무적으로 세무조사해야 한다면, 과세당국의 보수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 부담이 늘어나, 총 가산세 세수입에서 세무조사 비용을 제외한 순 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maximum tax rate spread)보다 커야 한다. 즉 $p^* > \max_k(t_{s1} - t_{sj_k})$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과세당국이 가산세율을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게 설정하면, 균형 전략에 의한 확률적 세무조사를 선택하여 의무적 세무조사를 선택할 때보다 더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다음 정리로 남겨두기로 한다.

정리 3.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면, 과세당국은 투자자에 대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 비해, 균형에서의 혼합전략에 따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더 큰 기대 보수를 얻는다. 이와 같은 확률적 또는 의무적 세무조사 방식하에서 투자자는 동일한 기대 보수를 얻는다.

하지만 모든 타입의 과세당국이 의무적 세무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 타입의 과세당국만 세무조사를 선택하고 높은 비용 타입의 과세당국은 조사하지 않는다면, 균형 전략에 의한 확률적 세무조사가 이러한 전략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줄 수도 있다. 높은 비용 타입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

다. 먼저 가정 1이 성립하지 않으면, 높은 비용 타입인 과세당국에 세무조사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 가정 2가 성립하지 않으면, 낮은 비용 타입인 과세당국조차 투자자를 세무조사할 유인이 없다. 가정 3이 성립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간접 경로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

지금까지 거주국에서 소득공제 또는 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분석했다. 지금부터는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받는다. 즉,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공제 한도가 된다. 달리 말하면, 거주국 h 에서 투자자의 세후소득은 외국 세율 $f(b(h,m))$ 과 국내 세율 t_h 중에서 더 큰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 투자자의 보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_B(a(\cdot), b(\cdot); h, m) = m(1 - \max\{f(b(h,m)), t_h\}) - E_\phi[mp(a(\cdot), b(h,m))]$$

만약 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f(b(h,m)) \leq t_h$ 이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공제하고, 투자자는 차액만을 거주국에 납부한다. 즉 거주국의 세수입은 $m(t_h - f(b(h,m)))$ 이다. 투자자의 세후소득은 $m(1 - t_h)$ 이다.

만약 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크다면, 즉 $f(b(h,m)) > t_h$ 이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모두 공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주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즉 거주국의 세수입은 없다. 투자자의 세후소득은 $m(1 - f(b(h,m)))$ 이다.

앞에서 균형에 대해 분석할 때 가정했던 것처럼, 가능한 거주국이 두 곳으로 1국과 2국이 있고, 1국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간접 경로이고, 2국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직접 경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1국에서의 국내 세율이 1국과 원천국 사이의 조세조약 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즉 $t_{s1} \leq t_1$)를 보자. 그러면 타입 (1,m)의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즉 원천국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경로를 선택하여 더 크거나 동등한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직접 경로를 선택할 때의 외국 세율이 이미 국내 세율보다 크지 않고, 간접 경로로 세금을 줄여봐야 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국내 세액과 외국 세액의 차이를 거주국에 내고 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한 세후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즉 간접 경로를 선택해서 세금을 절약해봐야 그 차액만큼을 거주국에 더 내야 한다. 한편 원천국으로부터는 세무조사를 받아 간접 경로를 선택했다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에게 직접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그리고 타입 (2,m)의 투자자에게도 직접 경로를 고르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왜냐하면, 2국에서 출발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는 직접 경로이므로, 간접 경로를 고르면 외국 세율이 더 커질 뿐이고, 원천국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타입의 투자자에 대해 직접 경로를 고르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그리고 만약 투자자가 이 우월전략을 구사하면, 원천국의 과세당국은 타입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해봐야 비용만 들고 추가적인 가산세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 정리로 남겨둔다.

정리 4. 거주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하에서, 만약 간접 투자가 유리한 거주국에서의 세율이 원천국과의 조세조약 세율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즉 $t_{s1} \leq t_1$ 이면, 과세당국이 전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자가 항상 직접 경로를 고르는 균형이 존재한다.

이어서 1국에서의 국내 세율이 1국과 원천국 사이의 조세조약 세율보다 작은 경우(즉 $t_1 < t_{s1}$)를 생각해보자. 국내 세율이 더 작기 때문에, 직접 경로를 선택하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외국 세액을 모두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간접 경로를 선택하여 외국 세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자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예상하는 과세당국은 확률적으로라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투자자가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 사이에서 무차별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리가 정리 2에서 살펴본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다음 정리의 증명에 대한 설명은 정리 2의 증명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정리 5. 거주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하에서, 만약 간접 투자가 유리한 거주국에서의 세율이 원천국과의 조세조약 세율보다 더 작다면, 즉 $t_1 < t_{s1}$ 이면, 다음과 같은 균형이 존재한다. 타입 c_L 과세당국이 확률 $(t_{s1} - \max\{f(b^*), t_1\})/\phi_L p^*$ 로 세무조사하고, 타입 c_H 과세당국은 전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타입 $(1, m)$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확률 $c_L/\overline{m}p^*$ 로 선택하고, 타입 $(2, m)$ 투자자는 항상 직접 경로를 선택한다.

이제 정리 4와 정리 5의 균형을 비교해보자. 거주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하에서, 거주국 세율이 조세조약 세율보다 더 크면, 정리 4에서처럼, 투자자는 직접 경로만 이용하고, 원천국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능한 세수입의 최댓값을 얻을 수 있다. 소득공제 또는 면제제도하에서와는 달리, 조세조약 쇼핑을 막아 원천국의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정리 5에서처럼 거주국 세율이 더 작다면, 투자자는 간접 경로를 확률적으로 선택하여 원천국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주국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거주국의 국내 세율이 낮으면, 조세조약 쇼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

국의 과세당국은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천국의 순세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따라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거주자들이 겪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거주지주의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자본수출 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투자자가 자신의 거주국에 투자하든지, 외국에 투자하든지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없어져, 거주국의 조세제도가 자본수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자본수출 중립성을 만족하면, 투자자는 자본을 국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할 것이므로, 자본 투자에 있어 전 세계적인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영의 목적이 다른 나라(원천국)의 세 수입 감소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듯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 중에 조세조약 쇼핑 방지 효과도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부수 효과의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와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투자자의 거주국이고, 이 거주국의 세수입은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만큼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조세조약 쇼핑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원천국에게로 돌아간다. 조세조약 쇼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수입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기에 따라서는 거주국이 운영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원천국이 무임승차하여 세수입 감소 방지라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주국과 원천국 사이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8) 한편 자본수입 중립성(capital import neutrality)을 만족하면, 어느 국가에서 투자를 할 때 그 자본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거주지 과세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거주지 과세원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지키고 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을 만들어 균형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행동이 투자자 거주국의 과세제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가능한 대답을 모색해보자.

첫째, 투자자가 조약 쇼핑을 위해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얼마나 빈번히 이용할 것인가? 정리 2에서 간접 투자 경로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주국으로부터 오는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c_L/\overline{mp}^*$ 의 확률로 선택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았다. 물론 이러한 균형 확률은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 쇼핑이 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항상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면, 과세당국도 항상 투자자를 세무조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는 가산세나 조세불복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의 형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직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때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조약 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적절한 범위의 확률로만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균형 확률은, 투자자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비용과 간접 경로 이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간접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만약 원천국 정부의 입장에서 조약 쇼핑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가장 근원적인 대응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접 경로를 모두 없애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의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접 경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라도 그러한 경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약 쇼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약 쇼핑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과세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리 2에서 세무조사 비용이 낮은 과세당국이 $(t_{s1} - f(b^*)) (1 - t_1) / \phi_L p^*$ 의 확률로 투자자를 세무조사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았다. 물론 여기서 계산한 균형 확률도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형의 가정을 정확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더라도, 투자자의 조약 쇼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가산세율과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조약 쇼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사점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정리 3에서는, 가산세율이 최대 세율 스프레드보다 더 크면, 과세당국이 투자자에 대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 비해, 균형에서의 혼합전략에 따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더 큰 보수를 얻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은 조약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높은 가산세율을 설정하여 일정한 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약 쇼핑은 원천국의 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과 2에서는, 조세조약 쇼핑에 의해 원천국의 세수입이 $\overline{m} \sum_{k=1}^{\ell} q_k (t_{s1} - t_{sj_k})$ 만큼 감소하며, 투자자가 $\ell \geq 1$ 가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모두 같은 확률로 선택하면, 이론적으로 계산한 세수입 감소분을 $(c_L / p^*) (1 / \ell) \sum_{k=1}^{\ell} (t_{s1} - t_{sj_k})$ 으로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감소분 추정식을 보면, 평균 세율 스프레드에 비례하여 조약 쇼핑에 따른 세수입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평균 세율 스프레드란, 직접 경로를 이용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t_{s1} 과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t_{sj_k} 의 차이를 가능한 ℓ 개의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에 대해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도 조약 쇼핑에 의한 원천국 세수입 감소분의 크기를

가능하는 데 있어 평균 세율 스프레드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의 거주국에 따라 국외소득 과세면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달리 설정될 경우, 투자자의 조약 쇼핑 행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거주국에서 국외소득 과세면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정리 2에서처럼,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즉 정리 2의 균형에서는 조약 쇼핑을 방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약 쇼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리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국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균형이 존재한다. 거주국의 세율이 높으면, 거주국에서 납부할 세액도 많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도 크기 때문에, 조약 쇼핑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거주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투자자의 세후 소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리 5에서 보듯이, 거주국의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 2의 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하여 조약 쇼핑이 일어날 수 있다.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거주국 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본래 목적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과, 조약 쇼핑을 방지하여 혜택을 누리는 국가(원천국)와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거주국)가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거주지 과세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거주지 과세원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외소득 과세면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IV. BEPS 방지 프로젝트와 조세조약정책 과제

OECD/G20에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BEPS 프로젝트’인데, 15가지 액션플랜(action plan)별로 각국 정부에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말까지 액션플랜별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우리 과세당국과 법원은 최근 10여년간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며 국제조세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BEPS 액션플랜의 권고를 따라 세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므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액션플랜별 논의 내용을 <표 IV-1>로 요약하였다.

다만 BEPS 액션플랜의 권고 사항을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BEPS 프로젝트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정부와 경제계가 충분히 공유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BEPS 액션플랜의 권고를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세무조사하거나 과세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EPS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완료된 후의 미래 상황도 고려해서, 우리 정부와 경제계의 장기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BEPS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년 동안 BEPS 프로젝트가 국제조세제도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표 IV-1〉 BEPS 프로젝트 요약

번호	내용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정책 논의 - 디지털재화(소프트웨어, 음원) 유통 및 소비에 따른 과세 문제 해결 - 디지털 경제활동 관련 BEPS 총론에 해당
2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 효과 해소 -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국가별 과세 분류가 상이하여 일어나는 문제 해결 - 예: 전환사채(채권/주식 혼성상품) 거래, 이자비용공제와 익금불산입 결합
3	피지배외국법인(CFC) 세제 강화 - 적용 대상 지역(국가) 조건, 지배조건(50% 이상) - CFC 소득산정(능동적 사업소득 포함 여부, 총소득 또는 거래별 적용) 방법 등 논의
4	이자공제 및 기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세원잠식 방지 - 과세자본세제에 대해 논의: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는데, 고정비율과 기업그룹의 평균 재무비율을 함께 고려, 적용예외 산업부문, 이월공제
5	투명성과 실질성을 고려하여 유해조세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을 규제 - 조세감면 예규에 대한 정부 간 의무적 정보교환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 혜택제한조항 및 주목적 심사조항 도입 - 부동산주식 보유기간 조건 강화 등 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안 마련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인 회피를 방지 - 종속대리인, 계약 및 업무 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방지 -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축소, 보험대리인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 검토
8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법 정비 - 무형자산 정의, 가치평가법, 현재가치할인법 등 이전가격 산정방법 논의
9	위험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법 정비 -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원가분담약정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방지
10	기타 고위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법 정비 - 이익분할방법 정비, 경영자문료 및 본부경비 관련 이전가격 산정
11	BEPS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론 개발 - BEPS 지표 개발: FDI/GDP 비율, 이윤율, 유효세율, 사용료/연구개발비 비율, 이자비용 비율, 집계 지표 및 채널별 지표 비교
12	공격적 조세전략(ATP)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적 신고제 도입 - 납세자로 하여금 ATP를 사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
13	이전가격 문서화 절차 정비 - 마스터파일(다국적기업그룹 전세계 사업현황), 로컬파일(개별 국가 사업현황) - 국가별 보고서(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사업현황 및 거래정보 요약)
14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제도 수립 - 상호합의절차를 보완하는 중재절차 도입 - 중재개시 의무성이나 중재결과 구속성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대안 논의
15	다자 조세조약 개발 - 양자 조세조약을 다자 조세조약으로 확대 - OECD 모델 개정에 따른 실제 조약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

자료: BEPS 홈페이지 (<http://www.oecd.org/tax/aggressive/beps-2015-final-reports.htm>) 참조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BEPS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로 인한 피로감이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BEPS 프로젝트로 개정되거나 도입될 여러 새로운 국제조세제도에 실질과세원칙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부 간 또는 정부와 납세자 간에 조세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조세분쟁을 해결하는 데 긴 시간이 들고 상당한 비용도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누적적으로 발생할 때 BEPS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국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BEPS 액션플랜의 논의 사항을 정책으로 이행하는 데 너무 앞장설 필요는 없다는 점과 앞으로 발생할 정책 피로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BEPS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세조약정책과 관련된 BEPS 액션플랜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Action 6) 및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제도 수립(Action 14)과 관련된 조세조약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BEPS 프로젝트에 속하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대해서도 정책과제를 정리해본다.

1.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세조약 남용은 원래 조세조약이 의도했던 취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의 조항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세조약 남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이지만, 조약 쇼핑 외에도 조세조약 남용에 있어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조약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에 비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세조약 남용 사례

중에서 조약 쇼핑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약 쇼핑 방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이 부여하는 제한세율 적용, 비과세,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조세조약이 다른 조세조약들에 비해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더 좋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의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더 좋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조약 쇼핑이라 부른다. 조약 쇼핑은 주로 더 좋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도관 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⁹⁾ 이처럼 조약 쇼핑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들이 조약 상대국이나 소득 구분에 따라 조약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설정하고, 조약혜택을 받는 대상을 자국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약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주자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조약 쇼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제한’ 제도를 국내 세법의 조항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조세조약의 조항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BEPS Action 6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s; LOB)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2014년에 Discussion Draf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OECD 모델의 혜택제한 조항을 요약하면 <표 IV-2>와 같다.

여기서 요약한 내용만 보아도, Discussion Draft에서 제시하는 OECD 모델의 혜택제한 조항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4년에 Discussion Draft가 발표된 이후, 이러한 혜택제한 조항을 과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9)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 쇼핑이 가능한 간접 투자 구조를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의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15년 5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Revised Discussion Draft를 발표하면서 간소화된 혜택제한 조항을 제시하였다. 간소화된 조항에서는 세원잠식방지 조건(제2항 e), 파생적 혜택(제4항), 주목적심사(제7항) 등을 삭제하여 조항을 단순화하고, 간소화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조약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을 상호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¹⁰⁾

〈표 IV-2〉 BEPS Action 6 Discussion Draft의 혜택제한 조항

조항	내용 요약
제1항 적용범위	체약국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제2항에서 정의하는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제2항 적격인	적격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함 a) 개인 b) 정부 및 정부기관 c) 상장법인 (거래스 및 관리장소 조건) d) 비영리기구 및 연기금 e) 지분율 및 세원잠식방지 조건 f)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혜 조건을 명시
제3항 능동적인 사업수행	제2항의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 체약국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체약국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4항 파생적 혜택	동 조약의 혜택 또는 동 조약의 혜택만큼 유리한 다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거주자(동등수익자)들이 소유하며, 이들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회사 총소득 중 일정 비율 이하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5항 재량적 구제	이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약국의 당국이 조약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제6항 정의	거래스, 주식, 관리장소, 집합투자기구, 동등수익자, 이중상장회사 등 동 조항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함
제7항 주목적심사	이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약 혜택을 얻기 위해 거래를 구성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국이 조약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2014), pp. 24-74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작성

10) 자세한 내용은 홍성훈·정훈·홍민옥(2015)에서 소개한다.

미국, 일본, 인도와 같은 나라의 일부 조세조약은 이미 혜택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부 조세조약이 혜택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간접 경로 투자를 통해, 즉 조약 쇼핑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조세조약이 관련되는 투자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간접 경로를 선택하여 투자하였다가 조약의 혜택제한 조항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조약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서 일부의 조약만 혜택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혜택제한 조항이 있는 조세조약을 회피하여 투자 경로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조세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조약 쇼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일부의 조약에만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하고 나머지 조약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조세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이 없는 국가를 경유국으로 하여 투자 경로를 설정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경유국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조약 쇼핑을 막는 데 있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거래는 어차피 조약 쇼핑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외교적 관점에서는 성과로 보일지 모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조세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조약에만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 조약 쇼핑 방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과 투자 경로상 주요 경유국이 아닌 국가와의 조약에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도 별다른 방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조세분쟁 해결제도 수립

국제적인 조세분쟁에는 납세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들이 관련된다. 한 납세자가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다른 관련된 나라에서는 더 낸 세금만큼 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줄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은 소득 원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므로, 어떤 소득을 사용료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원천국과 거주국의 과세권이 완전히 반대로 결정될 수도 있다.¹¹⁾

납세자와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들이 관련되는 국제적인 조세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내법적 절차를 따라 행정심판 또는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나라의 당국과 납세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세조약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상호합의절차를 두어 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당국들이 과세 사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상호합의절차에 더해 중재절차도 허용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해석, 부당한 과세처분, 과세소득의 조정 등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 우리 당국과 조약 상대국의 당국 사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이른다. 조세조약 및 세법을 통해 상호합의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당국은 상대국의 당국과 협의하여 절차를 개시한다. 납세자가 개시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거나, 납세자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당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¹²⁾

11) 대표적인 사례로 *Boulez v. Commissioner*, 83 T.C. 584 (1984)를 생각해볼 수 있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 상호합의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상호합의절차는 두 당국이 사안에 대해 문서로 합의할 때 종료하지만, 만약 절차를 개시하고 5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 8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두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였고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고 당국 간 합의내용이 있다면, 당국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 강조되면서 조세불복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합의절차는 당사국의 자발적인 협조와 합의를 강조하는 제도라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 조세불복 사건을 시의성 있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서는 과세당국들이 사안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들이 선임한 중재판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중재판정부는 국제경제 및 조세 분야의 전문가인 판정관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3명 또는 홀수의 판정관이 있다.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판정부는 두 과세당국들이 각각 제안한 의견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3인의 의견을 작성하여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관을 누구로 선임하느냐, 그리고 판정관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중재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중재절차 도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판정관들의 후보군을 구성해야 하고, 중재판정부에서의 의사결정 규칙이 사안에 따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략적으로 이해하여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3. 조세정보 자동교환

국제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국의 과세당국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숨겨진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제

조세회피보다 불법성이 더욱 명백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과세당국들이 이러한 조세 및 금융 정보를 획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조세회피처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금융기관 비밀주의가 있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제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2010년 해외계좌 납세협력 법률(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제도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의 FATCA에 따르면,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및 관련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과 FATCA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이러한 정보 제공에 협력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자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OECD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공통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수립하고, 각국의 정부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모델을 발표하였다.¹³⁾ 2014년 9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47개 국가(지역)들이 ‘조기 채택국 그룹’(Early Adopters Group; EAG)에 참여하기로 선언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OECD 공통 보고 기준(CRS)에 만족하도록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금융, 사법 당국과 함께 계좌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13) 2014년 7월 발표된 CRS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계좌 보유 개인, 법인 및 실소유주에 대한 기본 정보(거주국, 납세인식번호),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좌 정보 조사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법교(2014)에서 찾을 수 있다.

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정기적인 정보 교환에 대비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별적인 정보교환협정이나 상대국에 따라 정보 교환 양식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편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하기 쉬워지면, 우리 국민들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도 증가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여 과세정보를 획득하려면, 금융계좌 신고 위반에 따른 처벌 중에서 일부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¹⁴⁾ 예를 들어, 과거의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이나 계좌 보유자 공시 조항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실제로 본 보고서가 작성 중이었던 동안 정부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해 자발적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2015. 9. 1. 참고

V. 결 론

조세조약은 여러 나라 사이의 조세정책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국제조세 제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조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는 게임이론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조세조약 세율 매트릭스에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 70개국 사이에서 약 9,900개에서 15,500개까지의 간접 경로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가 원천국인 경우를 살펴보면,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거주국인 경우를 보면, 경유국 세율 가정에 따라 영국,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 등 다양한 국가가 경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현실에서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는 투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나라가 경유국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가 아니라, 세금 최소화에 가까운 투자 경로를 찾도록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어서 투자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한 게임이론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에서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간접 경로를 선택하고, 과세당국은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선택한다. 이러한 균형 확률을 모형의 매개변수로부터 계산하여, 투자자가 조세조약 쇼핑을 선택할 빈도를 예측하고, 과세당국이 어떻게 세무조사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지 탐구하였다. 투자자의 조약 쇼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투자자의 경로 선택에 따른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하고, 가산세율도 감안하여, 세무조사 확률을 정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이러한 세무조사 확률로 투자자를 무작위 세무조사 하면서 가산세율을 적절히 높게 설정하면, 과세당국이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에 비해 더 큰 원천징수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을 선택하는 문제와 거주국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선택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일반화하면 더욱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최근 10여 년간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며 국제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정책 권고를 따라 세법과 조약을 개정하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조세조약에 혜택제한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조약에만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 조약 쇼핑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과 국제 투자 경로상 주요 경유국이 아닌 국가와의 조약에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에도 방지 효과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
진신고제도 시행」, 2015. 9. 1.
- 홍범교,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국세청 국세행정
포럼 발표자료, 2014. 9. 16.
- 홍성훈·안종석,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4-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홍성훈·정훈·홍민옥,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세법연구 15-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Hong, Sunghoon, *Strategic Treaty Shopping*, May 14, 2014.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436679>
- Hong, Sunghoon, *Taxation of Unknown Beneficial Owners: Treaty
Shopping with Incomplete Information*, May 23,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609632>
- Lejour, Arjan, “The Foreign Investment Effects of Tax Treaties,” Working
Paper, 2014.
- Lewellen, Katharina, and Leslie Robinson, “Internal Ownership Structures
of U.S. Multinational Firms,” Working Paper, 2013.
- Matthew O. Jackson, *Social and Economic Net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Mintz, Jack M., and Alfons J. Weichenrieder, *The Indirect Side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A: MIT Press, 2010.
-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4.

Thomas H. Cormen et al., *Introduction to Algorithms*, The MIT Press,
2001.

van't Riet, Maarten, and Arjan Lejour, “Profitable Detours: Network
Analysis of Tax Treaty Shopping,” Working Paper, 2015.

Weyzig, Francis, “Tax Treaty Shopping: Structur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outed Through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0(6), 2013, pp. 910~937.

〈웹사이트〉

<http://dits.deloitte.com>(접속일: 2015년 8월 26일)

<http://taxsummaries.pwc.com/uk/taxsummaries/wwts.nsf>(접속일: 2015년 8월
26일)

<https://www.gov.uk/eu-eea>(접속일: 2015년 8월 26일)

<http://www.oecd.org/tax/aggressive/beps-2015-final-reports.htm>(접속일:
2015년 12월 1일)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홍성훈

조약 쇼핑이란, 거주국이나 원천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한 도관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천국에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약 쇼핑이 가능한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을 수립하고 균형을 분석한다. 균형에서 투자자와 과세당국은 모두 확률적으로 행동하며, 특히 과세당국은 확률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구사하여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보다 더 큰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Network Analysis for the Korean Tax Treaty Policy

Sunghoon Hong

Tax treaty shopping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n investor reduces tax burden by using a conduit entity established in a country that is neither the residence or the source country. This report examines the structure of tax-minimizing investment routes in a tax treaty network by using network optimization techniques. The tax treaty policy of Korea has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tax treaty shopping. In addition there is almost no tax-minimizing investment route passing through Korea. This report also introduces a game-theoretic model between an investor and a tax authority. In equilibrium both players choose mixed strategies. The tax authority can raise more revenue by using the equilibrium random audit strategy than by using the mandatory audit strategy.

■ 저자약력

홍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허윤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윤민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5-08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발행	2015년 12월 31일
저자	홍성훈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4,000원
조판 및 인쇄	(주)정인&D
I S B N	978-89-8191-794-4 93320
